

의안번호	
의 퇴 인	김선민 의원
회 답 일	2024. 8. 8.
추 계 번호	24C1884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0.3조원(연평균 20.1조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초연금 대상자·지급액 변경 (안 제3조·제5조 등)	16.1	17.6	19.7	22.0	24.9	100.3	20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 및 제5조(기초연금액의 산정) 등	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해당연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,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지급 ※ (안 제8조제1항) 부부 동시 수급 시 현행과 같이 20%를 감액 (안 제8조제2항)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(제5조제4항~제7항 삭제) 국민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급자에 대한 감액 폐지 (법률 제12617호 부칙 제5조 폐지) 기초연금 특례 폐지 ※ (현행) 대상자: 노인 중 소득하위 70% 지급액: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,810원	의무규정
2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 제3항 삭제 및 안 제5조(기초연금액의 산정) 제8항 신설	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군인 재해보상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하되,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※ (현행)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 권자의 범위 등) 및 제5조 (기초연금액의 산정) 등	○	○ 최근 실적치 추세를 활용하여 추계
2	안 제3조(기초연금수급 권자의 범위 등) 제3항 삭제 및 안 제5조(기초연금액의 산정) 제8항 신설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분포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고, 안 제5조제8항은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편입될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수와 지급 단가를 알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 시행 시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
- (개정안 시행 시 총 재정소요) 2019~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추이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람 수 추이를 활용하여 추계
 - (대상자 수) 2019~2023년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
 - ① 단독 및 부부 중 1인 수급자와 ② 부부 동시 수급자로 구분하고, 동시에 감액 적용자 산출을 위해(이하 설명 참고)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㉠ 68% 이하인 사람과 ㉡ 68% 초과 100% 이하인 사람으로 구분하여 추계

[표 2] 2019~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(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로 한정)

(단위: 명, %)

구 분	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단독 및 부부1인	68% 이하	2,880,696	3,009,454	3,045,990	3,179,249	3,235,552	2.9
	68% 초과 100% 이하	147,495	160,655	220,789	225,976	265,272	15.8
부부2인	68% 이하	1,666,297	1,777,615	1,700,695	1,792,170	1,792,538	1.8
	68% 초과 100% 이하	398,398	418,097	490,254	532,404	569,099	9.3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(월평균 지급 단가) 2019~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액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가정
 - 단독 및 부부 중 1인 수급자는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기준 중위소득의 32%)을 전액 지급, 부부 동시 수급자에게는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% 감액하여 지급

[표 3]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추이

(단위: 명, %)

연도	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1인 가구	기준 중위소득	1,707,008	1,757,194	1,827,831	1,944,812	2,077,892	5.0
	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	512,102	527,158	548,349	583,444	623,368	5.0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단, 안 제8조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
* 2024년 현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이므로,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8%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감액이 적용되도록 설계

[표 4]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8% 초과 100% 이하인 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예상액

(단위: 원, %)

구 분		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1인가구 중위소득(A)			1,707,008	1,757,194	1,827,831	1,944,812	2,077,892	-
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8% 초과 100% 이하	단독 및 부부1인	평균 기준소득월액(B)	1,380,992	1,416,641	1,478,336	1,569,651	1,684,603	-
		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C)	512,102	527,158	548,349	583,444	623,368	-
		지급예상액 [(B+C)-A]	186,086	186,605	198,854	208,283	230,079	5.4
	부부2인	평균 기준소득월액(D)	1,409,583	1,449,460	1,517,924	1,612,102	1,725,573	-
		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80%(E)	409,682	421,726	438,679	466,755	498,694	-
		지급예상액 [(D+E)-A]	112,257	113,992	128,772	134,045	146,375	6.9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 적용 시 총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55.0조원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제도 변경 시 총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							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정안 시행 시 총 재정소요	43.0	46.7	50.6	55.0	59.7	255.0	51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현행제도 유지 시 총 재정소요) 2019~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및 단가 정보를 활용하여 추계

- (대상자 수)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발표)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상자 비율, 수급률, 대상자 유형별(국민연금 수급 여부, 가구 유형, 소득감액 적용 여부 등)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
 - 대상자 유형은 ① 단독 및 부부 중 1인 수급자와 ② 부부 동시 수급자로 구분하고,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적용 및 특례 적용을 위해 ㉠ 무연금자와 ㉡ 국민연금 동시수급자, ㉢ 직역연금 특례적용자로 구분
 - 전체 대상자 비율은 70%를 적용하고, 수급률 및 대상자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19년~2023년의 평균 비율 또는 추세를 활용

[표 6]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수급 대상자 수 추계

(단위: 만명)					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65세 이상 노인(A)	1,051.4	1,112.5	1,159.7	1,212.5	1,252.1
수급 대상자 비율(B)	70%	70%	70%	70%	70%
수급률(C)	99.1%	99.1%	99.1%	99.1%	99.1%
기초연금 수급자 수 합계 (A×B×C)	7,292.4	7,716.2	8,043.6	8,410.0	8,684.7

자료: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발표)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(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가) 2024년도 기준연금액(월 334,810원)을 기준으로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¹⁾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
 - (감액비율)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은 20% 적용, 가구 유형(단독·부부 1인·부부2인)에 따른 소득역전 방지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비율은 2019년~2023년의 추세를 적용

1) 국회예산정책처 거시변수 전망치(2024.3.29. 경제전망 기준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2	2.2	2.1	2.1	2.1

[표 8]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정치

(단위: 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기초연금 기준연금액	342,845	350,388	358,097	365,617	373,2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현행제도 유지 시 총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54.7조원으로 추계

[표 9] 현행 제도에 따른 기초연금 총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현행 제도에 따른 기초연금 총 재정소요	26.9	29.1	31.0	33.0	34.8	154.7	30.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등을 변경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0.3조원(연평균 20.1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현행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 총재정소요(A)	26.9	29.1	31.0	33.0	34.8	154.7	30.9
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총재정소요(B)	43.0	46.7	50.6	55.0	59.7	255.0	51.0
추가재정소요(B-A)	16.1	17.6	19.7	22.0	24.9	100.3	20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